

무배당 메리츠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사업방법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메리츠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신탁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탁업자”)가 있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 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신탁업자로 한다.

4. 보험종목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5.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한다.

구 분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①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종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②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 지표금리(}\%) = (\text{회사채수익률} + \text{국고채수익률} + \text{통화안정증권수익률}) / 3$$

- 주) 1. 회사채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n년만기 회사채(무보증, AA-)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2. 국고채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n년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 : 국내 채권평가회사(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매일 공시하는 1년만기 통안증권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함
4. 평균값 :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함
5. n년만기 :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의 만기기간은 이율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③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한다.
-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 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한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 ⑤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국내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공시하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없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이율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부담금

부담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7. 보험기간 및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나. 납입기간 : 전가납

다. 수금방법 :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8. 해지환급금의 지급

가.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다.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적용이율 × 50%」로 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 ②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하는 경우

9. 청약서 등의 서식

청약서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은 회사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10.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1.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① 계약자로부터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③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에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3. 단위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 부담금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나.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5. 이율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이율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나'항을 준용한다.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한다.

14. 기타 사항

가. 이 보험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나.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